

92. 2. 13

주부死傷때의 보험금

"가사노동 대체비 지급을"



주부가 상해를 당했을때 지불하는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주부가 사고를 당했을때 지급되는 보험금 손해배상 산정기준액이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화여대 가정관리학과 文淑才교수(46)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주부(鄭英禽씨(32)와의 공동연구) 주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주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이 현행 일용노임이 아닌 가사노동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을때의 비용으로 계산,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文교수에 따르면 피해자의 월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 화폐소득이 없는 주부는 무직자와 동등하게 처리돼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를테면 90년 현재 남편과

梨大 文淑才교수등 공동논문서 주장

無職취급 月27萬원 일용노임계산 不當
「집안 돌볼이」필요 최소 53萬원 산정해야

자녀 1명을 둔 42세의 주부가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인 일용노임 단가(월27만6천2백50원)를 근거로 계산한 산정소득액에 장례비 위자료 등

4백38원(을 기준으로 4천3백8만7천여원이 지급돼야 마땅하다는 것.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험금은 적당하게 주어져야 할 금액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한데 이러한 차이는 상실수익액의 산정기준을 현실수준의 노동대체비용이 아닌 일용노임단가로 삼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까지 가사노동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으로는 △가사노동을 세분화하여 노동종류별에 대한 단가를 적용(예컨대 요리는 요리사)지출되는 일일비용 기준으로 하는 전문가 대체비용 법△주부대신 한명의 직업

인을 고용했을 때 지불되는 일일비용 기준으로 하는 총합적 대체비용법△주부와 동일한 연령과 학력을 가진 취업자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기회비용법 등이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이들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부 59.1% 여 92.6.5 가사도 '직업' 인식

우리나라 주부의 절반 이상이 가정주부로서 하는 가사일을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단순히 주부의 본분으로 여겼던 것과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KBS 제2라디오 '안녕하세요, 황인용 서승현입니다' 제작팀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현대의 주부와